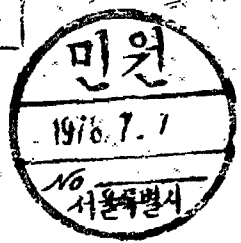


행위

의료보호 증설 기타 국민건강 향상하기



보건사회부

식일 1436 - 42866

(70-3713)

1978. 6. 29.

수신 서울특별시청

제목 질의서 이첩

1. 귀관내 강남구 천호동 422 천호 신시장 55호 내 이종무로부터
벌점과 같이 흰떡 제조에 따른 질의가 있어 이첩하니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바랍니다.

업무 질의서 1부. 끝.

발신	1978. 6. 29	결재	
수신	1978. 7. 1	지시사항	
과목	보건	사 회 부	아
담당자			
비고			



원 서 류
처리기간 24

주 신 : 보건사회부 장관

참 조 : 식품 1과장

제 목 : 과자류 제조업 허가에 따른 질의

유신과업 수행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현신하시는 장관님께
 금번 개정된 보사부 고시 제 16호 식품제조 영업허가 기준중 개정고시증 그
 내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9조 15항과자류 제조업에 빵, 병과류, 딸
 앙과류, 또는 병류 제조업을 포함한다는 규정되어 있는바, 단일품목인 "흰떡"
 (떡국에 사용하는 떡)을 제조코저 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7 나업종별 시설기준 (5) (2) 어떤 구분에 의하여 기계기구류를 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보건사회부 고시 제 16호 (78. 5. 4)호 제 4조에 의하면 신규허가
 를 받고자 할때 "좌" 항 - 방향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기존 허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1078 6 24	지	1978. 6. 22.
146232	시	
사무과	서울시강남구 천호동 422	
	천호신시장 55호	
	1978년 6월 22일	
	이	종 무

改正内容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다. 목 개정 (표시기준)

현행

개정

표시대상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 (다만, 별도 기준 당류 및 엷류, 절임식품류, 식용유, 다량 첨가물로, 첨가물 및 그 제제품, 식초, 주류, 고추가루 등 조식물 통조림, 향료 등의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의 연월일을 표시 할수 있으며 우유는 제조연월일을 표시 할수 있다)

아이스 크럼류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고 포장면적이 극히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표시 하지 아니 할수 있다

* 12.20 시행

@ 전세 수입금 → 1,200,000원
 상여: 78,742원 → 911,000원
 수수료 → 3,000원 × 3.00% = 90원
 911,000원

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회국장	
[인]	[인]	[인]	[인]

관인생략

1/87

273

의료보호 증실관서 국민건강 향상하자

보건복지부

78. 7. 20
1978. 6. 20.

42호
841
식업 1436 -

12-9491
(70-3713)

수신 수신지참조

제목 조리사에 관한규칙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용지침시달

1. 식업 1436-8374 (78.6.20) 호의 이첩임

2. 보건사회부명제599호 및 제600호 (78.6.20)로 조리사에 관한 규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각각 별첨과 같이 공포되어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이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2. 주요 내용

가. 조리사에 관한 규칙

보건행정국장	보건정책과장	보건지도
<i>(Signature)</i>	<i>(Signature)</i>	<i>(Signature)</i>

(1) 제9조 제4호를 개정 조리사 용시자격 범위를 확대, 국·공립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보도 시설에서 식품조리에 관하
어 학과 90시간 실습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당해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업무 지시에
착오 없도록 함 것이며,

(2) 제16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개정 조리사 면허증의 서한
교부 신청 수수료 100원, 제교부 신청 수수료 200원, 갱신 수수료 300원으로, 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원으로 인상조정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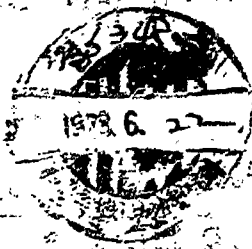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제5조 제1항제1호 마름을 개정 부패, 변질 식품의 음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식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을 표시하는 방법, 위치, 활자의 크기를 규정하고 아이스크림류에
대하여는 항생수지제 용기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도 제조년월일 표시를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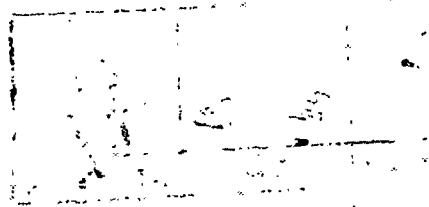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978. 6. 21

제 278



서울시



278

27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귀관내 영업소 및 영업동역 주지 시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함 것이며,

(2) 제5조 제품검사 방법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를 "법제6조 외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로 하였음.

(3) 별표 1와약적 합성품에 257조로 산란검을 새로이 생 지정하고 별표 2 표시대상 식품 및 첨가물중 "4. 과자류 및 방류"를 "4. 과자류, 방류 및 아이스크림류"로 하고 별표 4. 첨가물의 용도 구분중 식용색소 자색제1로 알루미늄 백이그를 삭제 하였음.

첨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 2부. 등.

보건사회부
시 은 등 번 시 26
보 건 사 회 부
국
국
국

수신처 시주 1-19,
나 1-11.

정부 공문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행 국 장 박 에 양 본 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중 다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 다만, 표시는 다음 요령

에 의하되 아이스크림류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고 포장단위가 극히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

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량음료 (유산균

음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년월만을, 우유에 표시하

는 경우에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품명이 표시된 위치의 중심부 위의 가까운

곳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를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중심부위의 가까운 곳에 그 표시가 곤
란한 경우에는 밑봉되는 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2) 활자는 5호 활자 크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의 표면 넓이가 30 평방센티미터
미만이거나 병마개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6
호 활자 크기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통조림식품의 경우에는 각인으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년월일의 전부를 아라비아숫
자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년의 표시는
말미의 숫자만을, 10월, 11월, 12월의 월의 표
시는 각각 O.N.D.로, 1월 내지 9월까지의

일표시는 아라비아 숫자 바로 앞에 0을 표시

한다.

제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
하여”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
에 의하여”로 한다.

제21조 제4항중 “수수료 200원”을 “수수료 500원”
으로 한다.

[별표1] 화학적합성품에 제257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57. 산탄검

[별표2] 표시대상식품 및 첨가물중 “4. 과자 및 빵
류”를 “4. 과자류, 빵류 및 아이스크림류”로 한다.

[별표4] 첨가물의 용도구분중 “식용색소 자색제1호